

(주)HB저축은행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을 2026년 09월 29일자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 채권양도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, 이자,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아울러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,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및 금융위원회 고시 『신용정보업감독 규정』에 따라(주)HB저축은행은채무자의개인신용정보를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에게 이전·제공할 예정이며,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관리·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,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(주)HB저축은행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(단,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~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). 채무조정 요청의 절차·방법은 (주)HB저축은행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hbsb.co.kr>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본

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## 양도예정채권 명세 (2026.08.31기준)

(단위 : 원)

| 대출과목   | 고객명 | 계좌번호         | 최초대출원금     | 대출원금잔액     | 이자        | 법적절차비용 | 장래이자면제대상 | 소멸시효완성여부 |
|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일반자금대출 | 김*정 | 01600040**91 | 40,800,000 | 31,070,175 | 2,852,409 | -      | 부        | 부        |
| 일반자금대출 | 오*숙 | 01600056**15 | 4,949,690  | 4,923,232  | 296,944   | -      | 부        | 부        |
| 일반자금대출 | 김*지 | 01600026**71 | 1,509,131  | 1,499,771  | 93,755    | -      | 부        | 부        |
| 일반자금대출 | 오*현 | 01600033**99 | 27,500,000 | 25,276,747 | 3,709,805 | -      | 부        | 부        |
| 일반자금대출 | 송*미 | 01600033**72 | 6,098,437  | 5,854,861  | 154,363   | -      | 부        | 부        |
| 일반자금대출 | 이*숙 | 01600033**03 | 425,870    | 417,447    | 4,049     | -      | 부        | 부        |
| 일반자금대출 | 김*영 | 01600076**72 | 2,719,754  | 2,519,781  | 31,762    | -      | 부        | 부        |
| 일반자금대출 | 김*영 | 01600076**54 | 2,546,699  | 2,385,982  | 10,685    | -      | 부        | 부        |
| 일반자금대출 | 김*영 | 01600076**63 | 8,086,477  | 7,504,455  | 106,514   | -      | 부        | 부        |
| 일반자금대출 | 유*진 | 01600039**61 | 7,000,000  | 6,510,174  | 548,642   | -      | 부        | 부        |

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|   |   |
|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|---|---|
| 일반자금대출 | 유*진 | 01600088**73 | 4,296,948  | 4,036,909  | 146,369   | - | 부 | 부 |
| 일반자금대출 | 최*제 | 01600032**46 | 3,521,506  | 3,463,345  | 159,666   | - | 부 | 부 |
| 일반자금대출 | 최*제 | 01600042**84 | 38,477,671 | 34,439,498 | 3,379,402 | - | 부 | 부 |
| 일반자금대출 | 최*제 | 01600084**53 | 287,570    | 284,108    | 794       | - | 부 | 부 |

\* 이자, 법적절차비용 등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\*\* 우편물 일괄발송에 따라 회생채무자, 파산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, 본 통지서는 이미 내려진 회생,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.

\*\*\*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,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.

## 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### ■ 채무조정 요청권

- (개요)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- (신청방법)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,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서는 당사 지점 또는 당사 콜센터(☎1670-6789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〈참고 : 채무조정 절차〉

| ①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심사 및<br>결과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동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채무조정서<br>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합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(채무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금융회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채무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금융회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채무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금융회사에<br>채무조정을<br>요청합니다<br>(구비서류 제출) | ▶ 채무조정<br>심사 후 결과를<br>통지합니다<br>(10영업일 이내) | ▶ 금융회사가 통지한<br>채무조정 내용에<br>대해 동의 여부를<br>결정합니다<br>(10영업일 이내) | ▶ 채무자가 동의한<br>채무조정내용에<br>대해 조정서를<br>작성합니다 | ▶ 조정서에 날인하면<br>채무조정 합의가<br>성립됩니다 |

※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### 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 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### ■ 법원의 개인회생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### ■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-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